

제13강 수출통관과 관세환급

강 의 : 관세청 정재완 박사

Welcome to
Korea Customs 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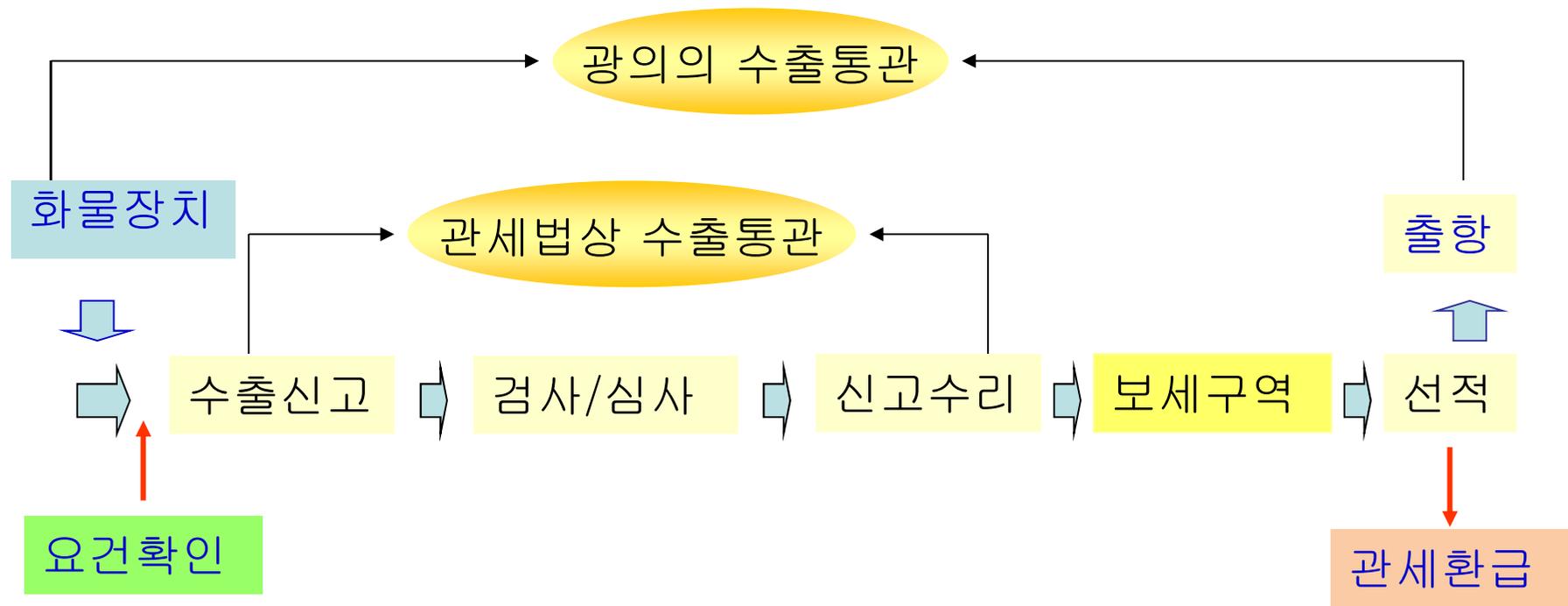


<주요 강의내용>

1. 수출통관절차의 개요
2. 화물의 장치와 수출신고
3. 수출신고인과 신고세관
4. 검사/심사와 신고수리
5. 선적관리
6. 물품수출시의 조세환급
7. 관세환급액의 산출방법
8. 개별환급액의 산출절차
9. 수출이행과 환급기간
10. 양도세액계산서

국세공무원교육원

1. 수출통관절차의 개요



2. 화물의 장치와 수출신고

-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통관과는 달리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
-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선적(항공기 적재)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, 당해 물품을 생산한 공장 구내에 장치한 상태에서도 수출통관은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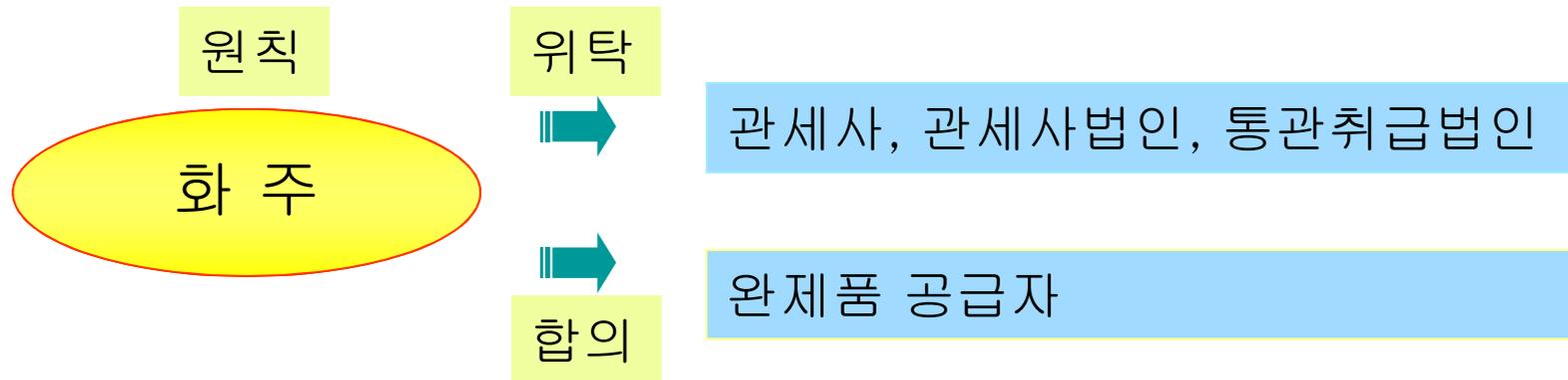
-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(S/R, S/O, B/L)별로 하여야 한다.

Shipping Request, Shipping Order

- 신고방법 : 수출통관전산시스템(CEDIE : Customs EDI for Export)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전송
- 신고서의 작성방법은 관세청고시인 ‘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’ 규정에 따른다.



3. 수출신고인과 신고세관



- 수출신고세관
- ◆ 원칙 :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
- ◆ 예외
 - 선상수출신고 :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관할 세관
 - 현지수출어패류 : 당해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한 세관
 - 원양수산물 :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

4. 검사/심사와 신고수리

- 수출신고에 대해서도 비율은 낮으나 현품검사와 심사를 실시
- 수출신고는 다음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
 - 자동수리 : 수출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신고를 수리
 - 즉시수리 : 수출신고 접수시 세관이 세번의 정확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간략히 심사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를 수리
 - 검사후 수리 :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고를 수리
-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
 -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도의 '영문수출통관증명서'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가능

5. 선적 관리

-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(기)적 하여야 함
- 단, 적재일정 또는 출항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간내에 선(기)적이 어려울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
- 기일 내 미선적시 세관장은 신고인 등에게 ‘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’를 한 다음,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선적 원인 규명을 하여 미선적이 확인될 경우 수출신고를 취소